

후대교배종 카놀라 MON88302×RF3

1. 법적근거
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2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 제1-3조, 제3-2조

2.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

| | 모품종 1 | 모품종 2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Event 명 | MON 88302 | RF3 |
| 특성 | 제초제저항성 | 제초제저항성/임성회복 |
| 심사완료일 | | |

3. 심사경위

○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의 2에 따라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및 후대교배종의 특성*등을 검토함

- *분자생물학적 분석, 단백질 발현량 비교, 생물활성, 영양성분 분석 등
- LMO 위해성 심사 접수('14.06.02.) 및 심사 진행

4. 심사결과

- Southern blot 분석결과로부터 단일 이벤트의 유전자들이 각각 안정적으로 후대교배종 MON 88302×RF3 카놀라에 유전됨이 확인되었고, 이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CP4 EPSPS 및 PAT 단백질들은 해당모본의 발현량과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도입유전자간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glyphosate(글리포세이트) 및 glufosinate(글루포시네이트) 제초제에 대한 내성 실험 결과 제초제내성이 각각의 해당 단일 이벤트와 유사하여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

- 또한 각종 성분함량과 작물학적 특성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비변형 대조품종과 대체로 유사하여 도입유전자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